2009. 12. 15(화)

제163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 검 토 보 고 서 →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배성한

차]	【목
^ [

1. 거창군	아동 • 여	성보호에	관한 조례역	안	···· 2
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3. 거창군	지방공무	원 정원조	례 일부개	정조례안	·· 13
4.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 …	••••••	••••••••••••	·· 17

<의안번호 제2009 - 57호>

기창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기점 토 보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12. 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9. 12. 8.

2. 제안이유

아동・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이 증가하여 사화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등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4. 법적근거

- 가.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 2010년 추경예산에 반영
-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09. 11. 13. ~ 2009. 12.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효과 제고 및 피해자 지원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한 책무와 그 책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 안 제14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
- 이 조례안의 제정은 최근 아동·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 아동·여성 대상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 동·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2009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우영
-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2000.1.12>
 -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 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 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 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차. 삭제 <2007.8.3>
 -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 8.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1997.8.22, 1998.12.28>
 -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 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 (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 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8.2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4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 •연구·교육·홍보
 -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09 - 58호>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12. 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9. 12. 8.

2. 개정이유

부서의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 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서의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 제10조).

- 분장사무 부서변경 : 기획감사실장 → 행정과장
 - 행정전산·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 부서 분장사무의 명확화
 - 재 무 과 : 부서의 분장사무 수정·보완
 - 민원봉사과 : 토지관련 민원에 관한사항 →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

- 1010추진단 : 승강기산업 클러스터조성 → 승강기산 업밸리 조성 및 지원
- 보 건 소: 가족계획 → 출산장려
- 나.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제8조, 별표).
 - 위치변경
 - 보건지소 : 웅양면 보건지소 등 2곳
 - 보건진료소 : 거기 보건진료소 등 6곳
 - 명칭변경
 - 보건진료소 : 구송 보건진료소 → 봉산 보건진료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그 밖에

(1)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3)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분장사무의 부서변경과 부서 분장사무의 명확화를 위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②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 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 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 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2009 - 59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____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9. 12. 7.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9. 12. 8.

2. 개정이유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 전달체계 개선 계획(사회장애인복지과 - 25343호(2009. 11. 04))에 따라 업무조정으로 본청과 읍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업무조정으로 본청 ⇔ 읍 정원조정

- 본 청
 - 일반직 6급 이하 계 : 212명 → 213명(증 1명)
- 거창읍
 - 일반직 6급 이하 계 : 34명 → 33명(감 1명)

4. 법적근거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그 밖에
 - (1) 신 구조문대비표 : 별지 별표로 갈음
 - (2)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업무조정으로 본청과 읍사무소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안번호 제2009 - 56호>

□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09. 12. 1.

나. 발 의 자 : 임종귀 의원 외 1명

다. 회부일자 : 2009. 12. 8.

2. 제안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현혈권장활동"과 "헌혈장려",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도마다 헌혈장려 활동계 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 4조).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헌혈권장활동 및 헌혈 장려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 록 비밀 엄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혈액관리법」 제4조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보건소 및 법무통계담당 합의
-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따라 국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거창 군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장려에 필요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 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 였고,
- **안 제4조**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에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규정을 정하였음.
-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등 혈액수급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증가되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혈액관리법

- 제4조 (헌혈권장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 ③헌혈권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 혈액관리법 시행령

- 제2조 (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 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